

「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9월 28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3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8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
(2022년 11월 13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김남호)

가. 제안이유

상위법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 매각대행사무 관련,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 ‘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’ 관련, 인용 조항 현행화

- 법 제71조의2제1항 ⇒ 제103조의3제1항(안 제4조)
- 시행규칙 제52조의3 ⇒ 제73조의8(안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영옥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조항의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,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조례 제 호

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“법 제71조의2제1항”을 각각 “법 제103조의3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규칙 제52조의3”을 “규칙 제73조의8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4조(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<u>법 제71</u> <u>조의2제1항</u>에 따른 전문매각기 관(이하 “전문매각기관”이라 한 다)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·선정하여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 다.</p> <p>1.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 전 2년 동안 <u>법 제71조의2제1</u> <u>항</u>에 따른 예술품등(이하 “예 술품등”이라 한다)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제12조(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 구) ① 전문매각기관은 군수로 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 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<u>규칙</u> <u>제52조의3</u>에 의한 수수료를 군</p>	<p>제4조(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) ① ----- ----- ----- <u>법 제103</u> <u>조의3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----- <u>법 제103조의3제1</u> <u>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 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규칙</u> <u>제73조의8</u>-----</p>

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